

연명의료 결정제도안내서

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

연명의료결정 제도란?

- ✓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
- ✓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
- ✓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
- ✓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.

* 단, 연명의료 유보·중단 이행 시,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

- ✓ 연명의료결정법은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✓ 다만,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,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✓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,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(傷病)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,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,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

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

- ✓ (의학적 판단) + (본인의사 확인) →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
- ✓ (의학적 판단)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
- ✓ (본인의사 확인 방법)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, ②연명의료계획서, ③가족 2인 진술, ④(환자의사 확인 불가 시)가족 전원합의

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

- ✓ 연명의료의 유보·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.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신청기관(장소) 검색

1855-0075,수신자부담1422-25

www.lst.go.kr



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

심폐소생술

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
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

부작용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,
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

혈액 투석

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
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

부작용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, 출혈, 감염 등 발생
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



항암제 투여

암을 축소, 억제,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기술

부작용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, 탈모증 등
발생 가능

인공호흡기 착용

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
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

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,
식도 천공, 피하기증 및 출혈 등 발생 가능





체외생명유지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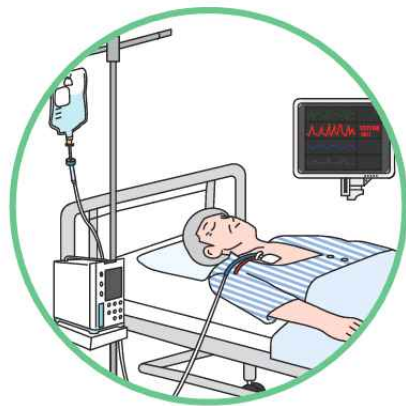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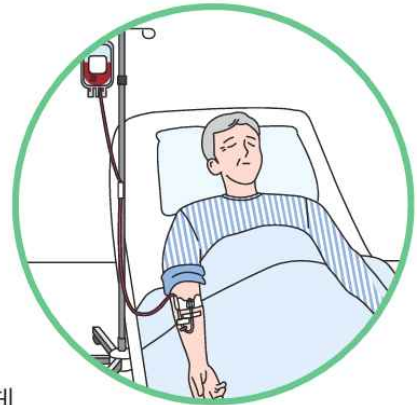
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

부작용 출혈, 응고 장애, 허혈, 공기색전증, 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

수혈

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요구될 수 있는 치료 방법

부작용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
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, 알레르기, 급성 폐 손상,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



혈압상승제 투여

쇼크, 중증 저혈압,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

부작용 지속적인 혈압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

기타

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

자주 묻는 질문

Q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?

A 그렇지 않습니다.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**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·등록된 의료기관**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(동법 제14조).
다만,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설치·등록이 어렵다면 윤리위원회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,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하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

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?

A 그렇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「**응급의료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른 **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**, **집에서 사망하는 환자** 등은 「**연명의료결정법**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따라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「**연명의료결정법**」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「**의료법**」, 「**응급의료에 관한 법률**」 등 관련 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.

Q 호스피스(완화의료)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?

A 아닙니다. **연명의료**는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에게 ‘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’로서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, 체외생명유지술, 수혈, 혈압상승제 투여,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. **호스피스**란 말기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, 만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, 심리사회적,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.

Q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,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?

A 아닙니다.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**통증 완화**를 위한 **의료행위**와 **영양분 공급**, **물 공급**, **산소의 단순 공급**은 지속됩니다.

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?

A 네, 가능합니다.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“**사전연명의료의향서**”나 “**연명의료계획서**”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가족이 없고,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「**연명의료결정법**」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.